

◎인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4-2호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08일

인천해양경찰서장

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구역 고시

1. 출입통제구역 지정

- 지정사유 : 갯벌(고립) 사고 예방
- 소재지 :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(해상탐방로 끝단 부분)
- 지정일 : 2021. 7. 9
- 통제시간 : 야간시간(일몰 후 30분~일출 전 30분)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(기상청 기준)
- 대상 : 모든 갯벌활동객(단순 출입 포함)
- 범위

- ① 북위 37°22'31", 동경 126°24'21" ② 북위 37°22'22", 동경 126°24'26"
③ 북위 37°21'59", 동경 126°24'47" ④ 북위 37°21'41", 동경 126°23'34"
⑤ 북위 37°22'29", 동경 126°23'22"
위 각 호(①~⑤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



2. 문의처 :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(032-650-2348)

3. 참고사항 : 출입통제구역 내에 출입 한 자는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, 같은 법 제25조(과태료)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※ 과태료: 1차 위반(20만원), 2차 위반(50만원), 3차 위반(100만원)

4. 재검토 기한 : 인천해양경찰서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-22호 「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」은 폐지한다.